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금등 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53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임금등 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6월 2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임금등 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법 제36조,¹⁾ 제43조,²⁾ 제44조,³⁾ 및 제44조의2⁴⁾의 위반행위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체불 총액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100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9조(벌칙) ① (생략) <u><신설></u>	제10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위반행위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u> <u>1.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u> <u>2.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09조는 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등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양형위원회는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중 ‘임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금체불의 현실적인 처벌의 가능성 및 처벌수위가 낮아 임금체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처벌하는 경우에도 체불금품 대비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어 처벌규정이 실효적인 임금체불 해결방안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⁵⁾⁶⁾ 임금체불 처벌기준의 강화에 대한 지적이 존재하고,⁷⁾⁸⁾ 최근 대규모 임금체불 기업의 파산 확정 등⁹⁾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체불 총액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가중처벌을 부과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러한 개정안은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변제 의무가 면탈되지 않도록 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궁극적으로 처벌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방지와 체불 피해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5) 송승은. (2023).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0(1), 327-358.

6)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사건이 77.6%로 체불 적발 시 처분이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침(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2025.9.2.)

7)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127400530>,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야"...노동부, 양형위원회에 요청, 연합뉴스, 김은경기자, 2025.3.11.

8)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52215521108190>, 돈 받을래? 소송할래? 악덕 사장 처벌 피할수 있는 나라[임금체불추적기]②, 아시아경제, 박현주기자·이현우기자, 2025.6.22.

9)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926>, [단독] 600억원 체불임금 못 받은 채, 위니아전자 노동자들 '해고통지',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2025.7.7.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가중처벌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임금체불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근로자별로 1죄를 구성하는 것인데,¹⁰⁾ 개별근로자에 대한 10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은 극히 희소하고, 체불 사업체의 누계 금액으로 보아도 10억원 임금체불 사건은 매우 적은 비율임. 참고로, 2021년 기준 전체 체불 사업체 중 체불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체 비율은 0.5%임.¹¹⁾

둘째, 안 제109조제2항이 적용되는 처벌대상 행위와 행위주체가 모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처벌대상 행위의 측면에서, 개정안은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체불 총액 10억원이 근로자 1인에 대한 체불액인지, 사업주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는 체불 총액의 규모를 의미하는지 등 개정안의 문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0) 대법원 1995.4.14. 선고 94도1724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11)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²⁾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참고로, 개별법상 형의 가중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주로 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¹³⁾, ② 경제범죄의 경우에 범죄로 획득한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¹⁴⁾, ③ 보호·감독의무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을 상대로 죄를 범한 경우¹⁵⁾ 등에 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음.

임금체불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하의 벌금, 프랑스의 경우 450유로 이하의 벌금, 중국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하고 있으며, 터키의 경우 근로자 1명당 125 튀르키예리라의 과태료를

12)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2

13)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4)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매월 부과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임금 체불을 절도(Theft)로서, 1년간 950달러 이상의 체불은 중대절도(Grand Theft)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범죄는 현행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의 가중처벌에 있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등 법률의 체계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의 상향과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현행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 상한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대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

참고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23.7.1.)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급여법 제44조제1호·제2호(퇴직급여 미지급), 파견법 제43조제3호, 제34조제3항(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19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 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 6월	1년 2월~2년 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